

제428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27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3)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7)
4.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0)
5.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5)
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9)
7.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9)
8.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0)
9.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면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7)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7)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8)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0)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9)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9)
1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9)
1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6)
1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98)
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2)
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3)
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7)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4)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2)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5)
2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10243)
2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9)
 2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5)
 2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0)
 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1)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6)
 3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1)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3)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8)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5)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0)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0)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5)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5)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7)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6)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4)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3)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0)
 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5)
 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8)
 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3)
 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4)
 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1)
 49.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0,14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9)
 50.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제선거 감시단 파견과 화이트해커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박정애 외 56,6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0)
 5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5)
 5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3)
 5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1)
 5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1)
 55.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퇴직 후 퇴직연금 즉시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김길중 외 51,04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1)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1)
 57.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3)
 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55)
6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813)
6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6)
6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10523)
6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가. 행정안전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라. 인사혁신처
 - 마. 경찰청
 - 바. 소방청
6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가. 행정안전부
 - 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65. 현안 질의

상정된 안건

| | | |
|---|-------|---|
| 1.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 | 6 |
|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3) | | 8 |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7) | | 8 |
| 4.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0) | | 8 |
| 5.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5) | | 8 |
| 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9) | | 8 |
| 7.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9) | | 8 |
| 8.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0) | | 8 |
| 9.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면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7) | | 8 |
|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7) | | 8 |
|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8) | | 8 |
|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0) | | 8 |
|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9) | | 8 |
|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9) | | 8 |

| | |
|---|---|
| 1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9) | 8 |
|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6) | 8 |
| 1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98) | 8 |
| 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2) | 8 |
| 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3) | 8 |
| 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7) | 8 |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4) | 8 |
|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 8 |
|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2) | 8 |
|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5) | 8 |
| 2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3) | 8 |
| 2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9) | 8 |
| 2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5) | 8 |
| 2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0) | 8 |
| 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1) | 9 |
|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6) | 9 |
| 3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1) | 9 |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3) | 9 |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8) | 9 |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5) | 9 |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0) | 9 |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0) | 9 |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5) | 9 |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5) | 9 |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7) | 9 |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6) | 9 |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4) | 9 |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3) | 9 |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0) | 9 |
| 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5) | 9 |
| 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8) | 9 |
| 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3) | 9 |

| | |
|---|----|
| 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4) | 9 |
| 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1) | 9 |
| 49.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0,14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9) | 9 |
| 50.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제선거 감시단 파견과 화이트해커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박정애 외 56,6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0) | 9 |
| 5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5) | 9 |
| 5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3) | 9 |
| 5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1) | 9 |
| 5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1) | 9 |
| 55.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퇴직 후 퇴직연금 즉시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김길중 외 51,04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1) | 9 |
|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1) | 9 |
| 57.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3) | 9 |
| 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 9 |
| 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55) | 9 |
| 6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813) | 9 |
| 6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6) | 9 |
| 6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10523) | 9 |
| 6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 10 |
| 가. 행정안전부 | |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 |
| 라. 인사혁신처 | |
| 마. 경찰청 | |
| 바. 소방청 | |
| 6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 10 |
| 가. 행정안전부 | |
| 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
| 65. 현안 질의 | 10 |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하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대체토론과 현안 질의를 병행한 후 소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의 목적은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조사 방법 그리고 관련 기관보고, 서류 제출 및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대검, 경찰청, 소방청 등이고 조사기간은 2025년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30일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본 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스스로 반성해야 될 점이 있어서 제가 경계하고자 꼭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국정조사는 정확하게 뒷북입니다.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해 저희 정치권이 다루는데 있어서 그것이 진짜로 재발방지를 위하고 또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를 보듬는 것인지 아니면 뒷북으로 해서 상처를 다시 키우고 정치적 갈등만 일으키는 것인지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건의 국정조사를 함께 있어서 동의하지만 저희가 진짜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보다 더 의미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괜히 다 지난 일을 뒷북으로 해서 문제를 키우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 이런 오명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경계하고자 말씀 남깁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 신정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돼 있다. 이것은 이미 오송 참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국회에서 다뤘었던 경험이 이미 있

습니다.

그런데 오송 참사를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었던 것은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참사와는 다르게 처리했었던 부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비롯한 그 어떤 곳도 나서서 백서 하나 발간하지 못했었던 무능했던 이런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뒷북이다. 아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여전히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충북의 지역사회는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맷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 갈등 아닙니다. 지역의 여든 야든 이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이미 합의되어 있는데 일부 정치권에 이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 문제인 것마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노력해 왔었던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의 다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 여야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사회가 한 발 더,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용혜인 위원님 발언 있으십니까?

○용혜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뒷북이라는 말에 200% 공감하고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뒷북을 쳐서 제대로 책임자 처벌도 못 하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지금에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뒷북을 치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많이 반성하고 되짚어 봄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당시에 국정조사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제대로 된 현안 질의 한 번 못 해서 충북도지사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계권자가 되어서 공무원들 정계를 내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계를 내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의 과정은 유족과 생존자들의 상처가 키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상처 치유의 과정이어야 하고요. 상처 치유의 과정이게 될 겁니다. 충북도, 청주시, 소방, 경찰 그리고 당시 행복청장을 비롯해서 오송 참사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 주신 박수민 위원님과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더 철저하게 충북도를 비롯한 관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주신다면 유족들과 생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늦은 만큼 더 많은 책

임감과 또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참사의 그 아픔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고통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33)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7)
4.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0)
5.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45)
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9)
7.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9)
8.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0)
9.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7)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7)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8)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0)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9)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9)
1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9)
1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6)
1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98)
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2)
1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3)
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7)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44)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5)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2)
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5)
2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243)
2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799)
2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5)
2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0)

2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1)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6)
3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1)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3)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8)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5)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20)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0)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5)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5)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7)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6)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4)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3)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0)
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5)
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8)
4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3)
4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4)
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1)
49.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0,14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9)
50.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제선거 감시단 파견과 화이트해커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박정애 외 56,6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0)
5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5)
5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3)
5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1)
5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1)
55.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퇴직 후 퇴직연금 즉시 지급하도록 공무원 연금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김길중 외 51,04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1)
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1)
57.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3)
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5)
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655)
6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813)
6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6)
6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10523)

(10시14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58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곧바로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별도의 순서 없이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정부 측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 질의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토론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 각 소관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63.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행정안전부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라. 인사혁신처

마. 경찰청

바. 소방청

6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행정안전부

나. 10·290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65. 현안 질의

(10시16분)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65항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현안 질의를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세부적인 결산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 수행 중에도 행정안전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196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08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853억 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그리고 이자액 반납금입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액은 총 70조 190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64조 5230억 원 등 총 67조 5060억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특수상황지역개발 등 총 2조 684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은 임명 후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만큼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신뢰가 없으면 위원회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역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우리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심의와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 과태료 등 총 100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8572억 원 대비 99.7%인 8545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 중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 관리에 4411억 원, 인건비로 2241억 원, 정당보조금으로 1010억 원, 선거관리 지원 등 각종 사업비로 88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은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보전 유예금 2600만 원이며 관서별 집행 잔액 등 2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실·화해위 박선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나 기금 간의 거래와 세입 결산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80억 3000만 원 중에 167억 2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3억 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9억 93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진실규명 조사 사업과 대외 홍보에 34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68억 8300만 원, 위원회 운영경비 64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진실·화해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원특조위 송기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장 송기춘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 수행 중에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8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는 세입 결산액은 없고 세출 결산액은 7억 85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46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4억 400만 원, 보안 소프트웨어 등 자산취득비 9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전용액은 5600만 원입니다. 전용 사유는 당초 사무처 설립준비단 운영 기간을 3개월로 예상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시행령 제정 지연으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5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민간 직원 채용계획이 당초 14명에서 4명으로 감소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시행령 제정 지연에 따른 조사 미개시로 발생한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도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였으므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인사혁신처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저의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충직함을 바탕으로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시험응시 수수료와 수입대체경비수입 등 총 428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조 8053억 원 대비 99.9%인 총 5조 7996억 원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인재 채용, 인사혁신 확산 등 7개 프로그램 총 2190억 원, 공무원연금기금 전출액 5조 5805억 원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수입 및 지출액은 각각 30조 14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찰청 유재성 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 중에도 항상 경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경찰병원 운영 관련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제주자치경찰 지원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1조 5508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2조 9777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조 8944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85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9억 원입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조언과 고견은 향후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이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소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허석곤 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존경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업무 수행 중에도 소방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수입대체경비 등 49억 원입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은 3690억 원이며 이 중 3302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차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3150억 1600만 원의 89.3%인 2813억 7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72조 4790억 2600만 원의 96.8%인 70조 1903억 9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집행률은 96.8%로서 불용액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의 불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 총괄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페이지부터 세출결산상 나타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빈번한 세목 조정을 통한 예산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정부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추진 사업은 예산액의 57.4%에 달하는 2억 4700만 원을 세목 조정을 통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과제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수용비는 세목 조정으로 증액된 금액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정책연구비는 세목 조정으로 증액된 금액의 59.1%가 불용되어 국회의 예산안 심

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필요성과 시급성도 미흡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다음 연도 이월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4분기에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지자체경쟁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예산이 법정 기준과 편성 목적에 따라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은 약 6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특히 임차료 예산은 최근 3년간 매년 40% 미만의 낮은 집행률을 보여 실제 회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령상 연 4회의 정례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실적은 연 2~3회에 불과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라는 본래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추진 일정과 예산집행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개 시점에 맞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 사업 추진 시 체계적으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사업 수행 방식을 용역 사업에서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산집행이 자연되어 실집행률이 26.6%로 저조하고 정책의 내용을 빈집 철거 지원으로 변경하여 빈집 활용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빈집 1개소당 지원비를 실제 철거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국비 100% 지원을 계획한 것과 달리 지자체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빈집 비율이 높은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사업과 관련하여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강제 수단 및 이행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장기간 경영개선명령 미이행 지방 공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비 매칭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행·재정적 지원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30억 중 9억 6000만 원만 실제로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32%로 저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배달료 지원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자치단체별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기간이 40% 이상 도과한 5월이 되어서야 국고보조금을 일괄 교부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법의관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의관 인력의 실효적인 충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의관 결원율이 30% 이상으로 전체 결원율 8%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법의관 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촉탁의 부검 집도 건수와 촉탁의 부검수수료 집행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문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부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인사혁신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0억 1700만 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8572 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99.7%인 8545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600만 원은 이월, 26 억 85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를 위한 인력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인건비 예산 중 각각 43억 원, 36억 원이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되었고 2024년도의 경우에는 반대로 인건비 예산 마련을 위해 59억 원이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되었으며 약 6억 원은 세목 조정을 통해 확보되었습니다.

24년도 인건비 부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복직인원 증가에 따른 결과임에도 연례적으로 이·전용이 계속되고 있고 과도한 이·전용은 다른 필요 사업의 추진 지연, 규모 축소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체계적 사전 추계 등을 통해 인건비 과부족으로 인한 이·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을 분산 편성한 뒤 다시 통합하여 집행하는 방식과 반복적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사업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정보 인프라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24년도에 집행된 5억 7600만 원은 동 사업 예산 2억 2200만 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관리 예산 3억 1800만 원, 재외 선거 관리 예산 3600만 원 등을 함께 집행한 것으로 이러한 통합 집행 사례는 최근 5년간 확인되며 위탁계약의 경우에도 다년간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체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업에 분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이후 다시 통합하여 집행하는 방식은 세부사업별 예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업별 관리를 어렵게 하며 반복되는 수의계약의

경우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 등 재정 운용 관련 법령과 계약법상 공공계약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과거사 관련 부분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회 증액 사업 추진 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업 지연 및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65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예산 심사 당시 3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확정예산으로 총 100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집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고 65억 3100만 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증액은 동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특별히 인정된 것으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회 증액분 이상의 금액이 차년도로 이월되었고 총 사업기간도 연장되는 등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이 추가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고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소관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600만 원이고 세출 예산현액은 180억 원으로 이 중 92.8%인 167억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을 이·전용하였으며 3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0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월 예산이 다시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 추모의집 보관 유해의 유전자 시료 채취 사업은 용역사업 계약액 2억 3500만 원 중 선금 50%를 제외한 금액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으나 계약업체의 유전자 시료 채취 미완수, 관련 기록 누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전년도 이월액 1억 17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그 집행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나 해당 사업의 이월액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향후 용역사업 진행 시 관련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이월 금액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20억 1600만 원이고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액 5조 5805억 5540만 원을 제외한 세출 예산현액은 2247억 4200만 원이며 이 중 97.5%

인 2190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57억 1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조달액 및 운용액은 30조 1489억 원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시험 시행을 위한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시험시행 내역사업인 시험관리 부대비용 사업은 당초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이후 세목 조정을 통해 3억 37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4억 3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 중 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목 조정은 동일한 목 안에서 세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하는 방식이지만 동 사업의 경우 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당초 예산 규모에 비해 과다하고 예산편성 시점부터 인지할 수 있었던 다수의 시설공사를 목적으로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혁신처는 향후 당해연도 예산 조정을 통한 추가적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을 지양하고 시설 현황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아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나아정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경찰청, 소방청 및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결산상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공공부문의 재난안전제품·기술 수요를 조사하여 재난안전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판로 모색과 생산·공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 결과 활용도 저조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수요조사 결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조사 결과 공개 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요조사 결과가 재난안전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수요조사 결과 활용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집행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 수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사업은 전국의 풍수해·지진재해 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국가재정 부담의 누적적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24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목표했던 25%에 미치지 못하는 6.5%에 그쳤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다른 정책보험 대비 풍수해보험에 민간보험사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율의 하향 조정보다는 보험업자와의 보험상품 개선 협의를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세입 수납액은 1조 5508억 3900만 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13조 712억 9600만 원 중 99.3%인 12조 9777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4년 82.4%의 적성검사 수검률을 적용해 약 289억 4300만 원의 수입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검률은 89.7%로 나타나 실적은 320억 800만 원에 달하며 예산 대비 10% 이상인 약 30억 6500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공단은 면허관리 사업 중 적성검사 발급 및 판정 수요를 적절히 예측하고 과거 실적을 토대로 현실적인 수검률을 적용하는 등 수입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실시율 저조 문제와 관련하여 영상녹화제도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청은 진술영상녹화 시설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 실시율이 21년 7%에서 24년 4.6%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절차 간소화, 수사관 교육 강화,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영상녹화제도 활용률을 제고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청입니다.

소방청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49억 1500만 원이고 세출 예산현액 3690억 3400만 원 중 89.5%인 330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은 예산 전용을 통해 의료가스장비 배관설비 공사 등 필수시설 설비 공사 재원을 확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가스장비 배관 등은 의료기관 허가를 위한 필수시설인데 당초 국립소방병원 계획 설계 단계에서는 해당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은 해당 시설 설비를 중간 설계 단계에서 제외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예산 전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서 시설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확정·조정 단계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보입니다. 소방청은 향후 대규모 공사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 사업은 119항공정비실 건립 사업 일정에 자연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헬기를 한 곳에서 정비하기 위하여 119항공정비실을 건립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 기준으로 24년 9월경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공사 착공이 25년 10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초 계획 대비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설계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약 1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연약지반 보강공사 재원 확보와 더불어 기본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야 할 법정의무 시설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실시설계 단계에서야 반영하는 등 사업 중간에 공사비 증액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소방청은 공사 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없으며 예비비로 배정받은 세출 예산현액 8억 9000만 원 중 88.2%인 7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마련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의 건물을 임차하였는데 24년 9월 임대차계약 시 임차보증금을 2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집행 승인 시 즉시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향후 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예산집행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협안 질의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면서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오후에는 본회의가 있어서 오전 회의는 가급적 오전에 마쳐야 하므로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께서 가뭄 피해 지역을 현장 답사하는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1시 10분에 이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양당 간사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행안부장관님, 교육재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금 통합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현재까지는 아직 통합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수민 위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 시작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는 어디가 주관합니까? 행안부입니까, 교육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부·교육부를 포함해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지방교부금은 행안부 소관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행안부 소관이고요.

○박수민 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 기억이 선명한 것이 무상교육 9000억 지원 법률로 종료된 것을 저희가, 당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는데—교육재정이 여력이 있다고 해서—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 공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그것을 통합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교육제도의 통합까지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저는 저출산 때문에 저희가 학령인구 줄고 있는 것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교육재정교부금은 GDP 증가에 따라서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젠가 논의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도전했던 것인데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리성에 기반했기 때문에 지지하고요. 다만 대단히 파괴력이 큰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되고 ‘기재부가 할 것이다’ 이런 방관자적인 태도로 안 되실 거예요. 교육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정면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와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15시간 미만 초단기 공공근로자 무기계약 의무 전환 추진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다시 한번 말씀……

○박수민 위원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공공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한다고 국정기획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추진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초단기 공공근로자가 대부분 고령층 공공근로 이런 건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박수민 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근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게 먼저 우선이고 공공근로 현장에 가 보시면 그것이 효과적이고 정말 제대로 자리 잡힌, 저희가 정말 필요한 곳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의무 전환하면 이것은……

예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해서 이벤트는 했지만 고용시장에는, 노동시장에는 엄청난 파급을 줬습니다. 저는 동일 안건으로 보고 있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공공근로 형태의 단기근로자의 경우에 지금까지 매우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그다음에 또 급여 수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무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는 직무를 분별해서 무기계약직이 가능한 범위를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지금 저희 당이 그렇게 반대했고 경영계·재계가 다 반대했음에도 무리하

게 노동법 2조·3조를 고쳐서 노란봉투법이 강행 통과됐고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 못 하겠다 하는 목소리가 비등합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이 나서서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것을 하나의 이벤트화해 갖고 또 파급을 준다면……

노동자를 진짜로 위하는 길은 노동의 양이 많아야 됩니다. 일자리가 많아야 되고 그 일자리의 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선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시려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국민 중에는……

○**박수민 위원** 아닙니다. 모든 일자의 질은 좋아져야 되고 장관님, 이것 대단히 신중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 못 하겠다고 벌써 비등합니다. 저희 당은 누차의 경고를 드리고 있고요. 기업이 일을 안 하면 노동자에게 일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동법 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진행하시면 그것은 역사의 후과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 대단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직무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인사혁신처장님, 서울시에서 예행연습을 하면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확정됐다는 가짜 공문이 한번 나갔는데 인지하고 계시나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이것 왜 대응을 안 하시지요? 그거 해명을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상당히 놀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혼선이 있을 텐데……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6.6%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수민 위원** 예.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것은 저희가 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서 아마 현재 내년도 급여 인상률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 대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얼마 안 되셔서 자리가 안 잡히셨을 수는 있는데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인사혁신처가 하는 3대 업무 중의 하나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프닝이 있었으면 그것이 아니라는 해명 정도는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기본 업무고 공무원 사회에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시도·시군구를 그룹별 6개 인자에 대해서 안전등급을 평가를 합니

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주지요. 숫자가 많은 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시설 개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PPT를 보시면 2023년에 지자체 안전등급을 했어요. 그런데 교통 분야에서는 세종시와 경상북도가 가장, 5등급을 먹었습니다. 범죄에서는 대전과 제주가 5등급이 됐어요. 이 사업의 취지대로 한다면 2024년도 개선 사업은 교통은 세종과 경북이 돼야 되고 범죄는 대전과 제주가 돼야 되겠지요.

다음 PPT 봅시다.

그런데 실제로 실시된 개선 사업을 보면 교통에 있어서는 세종과 경북이 빠졌어요. 5등급을 먹었는데 세종과 경북은 빠졌어요. 범죄에 있어서도 대전은 빠졌습니다. 이 취지하고 약간 상충되고 취지가 몰각됐지요.

그리고 컨설팅 사업의 사업 분야도 보면 강원 고성의 경우는 범죄와 자살이 5등급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한 사업은 교통과 생활안전을 했어요. 충남 보령은 생활안전 5등급, 자살이 5등급인데 또 교통과 범죄가 됐습니다.

즉 요약하면 가장 등급이 낮은 지역에서 사업 자체를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 또한 개선 사업을 신청한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안전등급과 추진하는 사업의 연계성이 일정치 않는 것이지요.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했더니 이 사업이 공모 형태로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왜, 돈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자체의 안전 취약 분야에 있어서도 돈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해요. 실제로 전국에 4·5등급을 받은 지자체 열여섯 군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런 대안은 국비 보조금이 50이고 지방비 50인데 국비나 광역시도의 지원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연계성 없는 사업이 자꾸 등장하는 것은 이게 신청하는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 유형별로 개별 신청할 게 아니라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을 특정해서 지구 단위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각 지자체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도를 보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부터 또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600억대 해외 원정 도박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내사를 중지했다, 그리고 그러다가 수사 정보가 통일교 쪽에 흘러갔다. 이러한 언론 보도 보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양부남 위원 안 보셨어요? 신문을 안 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보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양부남 위원 아니, 이런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특검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윤모 통일교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사실도 적시가 됐습니다, 수사 정보가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왜 내사 중지했어요, 이 사건?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이거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600억대 해외 원정 도박을 했는데 내사에 착수했다가 중지했다는 거예요. 내사에 착수했다가 중지했다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거 파악 안 하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부분은 제가.....

○양부남 위원 아니, 언론이 매일 떠들어 대는데 그것 파악을 안 했어? 파악을 해 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리고 이것 왜 내사 착수했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지됐는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특정인에 의해서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유출 경위도 파악해야 되고 유출에 관련된 경찰관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파악도 안 하시고 내사가 왜 중지됐는지, 수사 정보가 유출이 왜 됐는지, 정말로 된 것인지, 됐다면 그 관련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시면 이것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꼭 확인해 보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양부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직무대행,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양부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모든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경찰행정을 총괄하는 직무대행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건 대단히 문제 있어 보여요.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 받으셨잖아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 회의에 뭐 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시려면 나오실 필요 없어요.

다음부터 이런 식의 답변 태도와 자세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다음, 이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이달희 위원 처장님, 인사혁신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본부만 594명……

○이달희 위원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한 70만 명 조금 넘습니다.

○이달희 위원 76만 3000명입니다.

처장님 이 제 한 달쯤 되셨는데요. 업무는 하실 만합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제가 미묘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임명되실 때 언론 보도를 보면 보수 인사는 물론 많은 여권 인사들에 대해 마구잡이로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 냈는데요. 오늘 바로 옆자리에 그중 한 분인 윤호중 장관님하고 나란히 앉아 계시니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웃픈 생각이 듭니다. 웃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습지만 슬프다는 뜻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한번 PPT 보시기 바랍니다.

PPT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이한열 열사 끌어안고 있는 그것 하나로 해 먹었다. 이런 애들이 민주당 다 말아먹었다’.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20대 대선 후 ‘다시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22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맡았던 윤호중 위원장에 대해서는 ‘무능한 아해들이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야당 비대위원장도 못 할 사람에게 대한민국 행정과 안전의 중책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이신 지금 처장님 입장에서 윤호중 장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인사조직론을 전공하고 가르쳐온 사람으로서 그런 평가를 좀 심하게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가 되었으니까 공직자의 눈높이에서 언행에 조금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처장님, 유튜브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운영하시면서 공직에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저는 은퇴한 경영학자이기 때문에 공직에 나갈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막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본인이 임명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는, 처장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민족의 축복이자 구원자’, ‘국가도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임기를 길게 하면 좋겠다.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 해도 될 사람’ 등 마치 이건 우리가 북한에서 김 씨 일가를 우상 숭배하듯이 극찬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 일인 독재 총통으로 모시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발언들을 쏟아 냈는데요. 그 쏟아 낸 발언들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사람들이 추천해서 한 보은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비판에도 이런 인사를 밀어붙이는 인사 참사의 중심에 처장님이 섰다고 생각하

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에브리리서치에 보면 인사 참사, 조국·윤미향 사면 등으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당선될 때의 지지율보다 더 낮은 45.6%로 하락했습니다. 보은 인사, 인사 참사 등으로 국정이 파탄 나면 대한민국이 파탄 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대한민국호에 타고 있고 그 선장은 대통령입니다. 맞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이달희 위원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게 우리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심에 처장님의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서에 보면 인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24년에 책을 한 권 내셨지요? 거기에 보면.....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21년입니다.

○이달희 위원 이십 몇 년이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21년.

○이달희 위원 21년 저서에 보면 인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서 라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람 보는 안목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처장님께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내가 충성심 있게 일을 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교보생명에 가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조도 반대하고 비전문가 인사가 와서 교보생명 망쳐 놨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에 나오실지 모르고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오셨으면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이런 식의 오만한 말 말고 공식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제가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인사평가·역량진단 전문가로서 했던 모든 발언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달희 위원 앞으로는 처장님 말씀 때문에 나라에 혼탁함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하기 전에요 장관님께서는 좌석을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해서는 김민재 차관께서 출석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장관님이 이석해 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면 우선 유재성 대행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행님,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곧 하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하고 나면 총경급 전보 인사를 하는데,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상식 위원** 그때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경찰국 설치 반대 집회하고 관련된 총경들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게 조금 엄정하게 해 가지고, 특히 또 일부 간부들 중에서는 그 당시의 조류에 편승해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편향된 입장을 보이는 간부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판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태도로 엄정하게 살피셔 가지고 그런 걸 바로 세워야 경찰이 바로 선다. 인사가 바로 서야 경찰이 바로 선다, 우리가 많이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곧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 경찰이 그야말로 국내 최대의, 최고의 수사기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경찰 수사의 비대화에 대한 시민들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한다든가 아니면 또 신설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보류된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외부적인 통제고 경찰 내부 통제 방안으로 저번에 제가 보니까 수사준법감시관, 수사인권보호관 같은 것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조금 실효적인 방안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부에 이런 비슷한 제도들이 꽤 시행이 돼 왔는데 다 실효성이 없었고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준법감시관이든 인권보호관이든 간에 실효적인 수단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스쿨존 있지 않습니까, 30km 이하로 서행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저한테 불평불만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일과시간 중에, 등하교시간 중에는 어린 학생들 보호하는 게 절대적인 과제이기는 한데요. 공휴일이나 또는 야간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경우에 이때는 조금 그걸 완화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

저도 사실은 여러 번 스티커를 빼이고,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게 당장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공청회도 거치고 경험적으로……

통계는 전에 보니까 야간이나 공휴일에 단속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알기로는 스쿨존을 야간이라든지 등하교시간 아닌 시

간에는 지금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상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장관님 대신에 차관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검찰개혁이 이제 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예고되기로는 곧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의결하는데 정부조직법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을 기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분리한다. 분리만 하면 될 것이 아니고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차관님은 수사 쪽은 아니시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고, 그 대원칙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완전한 분리인데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안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법무부에 그대로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것을, 기소청과 중수청을 기능적으로는 저렇게 분리하지만 조직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저는 같은 DNA를 가진 사람끼리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짬짜미를 해 가지고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모조리 기각하고 이걸 중수청이 대신 수사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장관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지만 차관님도 중수청을 행안부 안에 두셔 가지고 수사는 행안부 그다음에 기소는 법무부, 재판은 사법부 이렇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잘 받들어서요, 제가 지금 검찰개혁특위 실무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니까 행안부에 중수청이 수사기관으로 오면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 이런 일부 우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데 저희는 행안부에 설치되더라도 지금 경찰청이 독립돼서 운영되고 있듯이 잘 운영해서 수사기관의 집중화 우려가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장관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지난번 전체회의 때 부산의 영화숙이라든지 재생원과 같은 집단수용시설과 관련된 주관, 진상조사에 관한 소관기관을 장관님이 잘못 답변하셨거든요. 그것도 아주 잘못 답변하셔서 비판을 하고 오늘 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차관님한테 대신 받을 수는 없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아니에요, 그 사과의 의미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관님의 마음은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장관님한테 사과를 좀 받을 생각입니다.

그 대신에 경찰청장직무대행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자 비율이 2024년도에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성권 위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특징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은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명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했을 때 연간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봤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줄여야 되는데 갈수록 지금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 PPT 자료를 보면 2023년에서 2024년만 보더라도 5000건 이상 급증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해마다 이렇게 교통사고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맞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성권 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면허증 반납을 시도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직무대행님?

그냥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한 9.7% 정도 되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9.7%.

○이성권 위원 부산이 13.8%, 대구가 12.4%를 비롯해서 제일 낮은 세종의 경우는 3.5% 정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혹시 직무대행님 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시도 간에 교통 인프라가 좀 차이가 있고 또 운전자가 반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그것도 시도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일본의 경우 한 어느 정도 반납률이 있는지 아는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이성권 위원 초고령사회인 일본 한 30% 정도 됩니다. 우리가 9.7%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면 한 3배 정도로 적다고 봐야 되고 또 우리가 30% 이상 넘길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각 시도별로 보면 2021년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세종시를 끝으로 해서 전국 광역시도에서 고령운전자 반납 제도가 시도 단위에서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광역시도에서도 100% 반납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필요한 것은 양적인 팽창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상업시설에 할인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맞춤형 홍보를 하고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65세뿐만 아니고 더 높인 것,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광역시도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면 부산시 남구나 연제구·해운대구의 경우는 10만 원 플러스 추가로 30만 원 정도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밑에 있는 표에 나오는 것처럼 역대 해마다 반납률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래서 그 시도별로 잘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다른 시도에도 공유를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성권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여기는 농촌 지역입니다. 아까 대중교통,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인 울주군에도 이런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똑같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국비가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18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방비는 100억 정도를 돌파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청에서 이 효과를 분석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예산이 18억이었는데 내년의 정부안에는 27억을 반영해서, 금년에는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줬는데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좋은 제도들은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행안부의 비상대비정책국장님 오셨지요?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예, 나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시간은.....

○위원장 신정훈 예, 멈췄어요.

○이광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8월 14일 날 국정원에서 중앙행정기관 비상대피시설(상황실과 대피시설) 추진 사항 전수점검 대통령실에 보고하고요. 2024년 1월 9일 날 행안부에서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에 보고했지요?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비상대비 업무를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좀 하겠습니다.

1월 12일 날 바로 이어서 행안부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에 비상대피시설 구축 관련 추진 사항 공문 발송했지요?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그 부분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부 내에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그것은.....

○이광희 위원 그것은 알지 못해요?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비상안전기획관실이라고 별도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오셨나요?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참석 안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행정안전부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저희들이 사전에 좀 인지를 했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그러면 들어가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비상안전기획관실에서 공문 발송했습니다, 1월 12일 자로.

○**이광희 위원** 왜 발송하게 됐을까요? 을지훈련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또 했을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안전부는 훈령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고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광희 위원** 아니, 그래서 발송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광희 위원** 발송을 하고 나서 부서별 예산 계획서 세워서 여러 가지, 국회의 심의도 받고 정상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재부장관에게 협조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공문을 보면 각 기관별 추진사항을 통해, 비상대피시설 구축을 위해 기관별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안부에서 주지 않았던 것을 다른 부처를 통해서, 이 자료 제가 계속 요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중에서 병무청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예산 4억 2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유사성이나 시급성도 전혀 없는데 하필이면 병무청장이 새로 임명이 되고 그것도 김용현하고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되자마자 10월 초에 공사를 착수해서 심지어는 기재부가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동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 완공이 됐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터집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료도 행안부가 준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지금 여기에 있었던 모든 국가기관들에 다 이 공문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산 전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게 이례적이고 의도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미 계엄은 23년 8월부터 계획된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다만 문제가 있는 대피시설을 좀 보완하라고, 보강하라고 한 겁니다.

○**이광희 위원** 보완하라고가 아니라 4억을 들여서 새로 구축을 했고요. 여기 말고 조달 청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광희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여기만이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러니까……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이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안 주고 그럽니까? 이것 저는 완공 시점이나 위치와 기능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계엄 대비 지하벙커라는 의심이 들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런 비상대피시설 자체도 대외비, 1급 비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신처가 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다 주는 걸까요? 왜 행안부만 비밀스러워요? 그리

고 을지훈련이나 이런 때 각 기관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광희 위원** 저도 도의원 하면서, 도별로 다 지하벙커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기관들은 안 만들어 놓은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이광희 위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도 그렇고 해명을 따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최근 충북 영동군에서 기증한 역대 고가의 조경수·조경석이 대규모로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심지어는 이전·식재 비용 2000만 원까지 기증자가 부담했고요. 그러나 기증·수령 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사후관리 과정도 고사·폐기와 대한 공식 기록, 사진, 보고서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사건을 따져 보면서 이게 단일 지자체의 관리 부실만으로 끝났을까? 혹시 전국 지자체에 이런 식으로 조경수나 조경석이나 이렇게 기증을 하면 누군가 없어지도록 만들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사안이 단순 실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리의 중대한 법령 위반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즉시 착수할 것과 또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수사에 준하는 수준의 사실관계 규명을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저는 처음 듣는 소식인데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현황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조사 결과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국회와 관계기관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광희 위원** 아마 이곳 말고도 전국에 굉장히 많은 곳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유재성 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하셨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정춘생 위원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온라인까지 포함하면 3분의 1 가량이 참석을 했습니다, 190명. 이 중에 대부분 하향 전보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정춘생 위원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실이 어제께 질의를 했었는데요. 온 답변에 의하면 인사 내신을 적극 고려하는 등 불이익 회복을 추진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정춘생 위원 그 불이익 회복 추진, 구체적인 내용이 뭐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인사를 할 때 그 불이익이 없도록 성과와 역량에 의해서 합리적인 그런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간에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명예회복을 하실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명예회복 방안은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했듯이 전체적인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그 당시 총경회의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이번에 편찬하는 80년 경찰사에도 남기고 그리고 경찰인재개발원의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총경회의 때 나왔던 그런 자료들도 복원을 하고 또 총경회의와 같은 그런 소통채널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소통채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청장님, 청장님은 지금 전국의 전체 경찰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과거 경찰국이 신설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해서 그 엄혹한 환경에서 싸우셨어요, 총경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했던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기록을 남기겠다 이 차원에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명예회복이 됩니까?

저는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원상회복 그리고 보상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이번 인사 때 불이익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고 또 저희가 지금……

○정춘생 위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인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소방청장님.

○소방청장 허석곤 예, 청장입니다.

○정춘생 위원 얼마 전에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 전에도 있었는데 보고를 받았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경남 고성에서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춘생 위원 예.

○소방청장 허석곤 예, 내부적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춘생 위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방청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지금까지 저희들이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나면 긴급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매년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에—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거기에 따라서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대책을 금번에 걸쳐서 전문가들, 현장대원들과 함께 꼼꼼히 한 번 더 챙기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고성소방서로 전보되신 그분은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위원 그런데 그 심사 기준이 너무 높아서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트라우마센터 상담치료도 받고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청을 했는데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안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이게 10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준이 아니라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화재 현장, 참사 현장으로 달려가서 정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지만 그분들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청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또 추적 관리를 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 미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치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 사례를 봐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고 저희들이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저는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바꾸는데, 그때는 바람몰이 비슷하게 막 했는데 결국 실패하거나 별 성과를 못 얻은 제도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로스쿨 만들 때 그랬고 공수처 만들 때 그랬고. 왜 그러냐? 현재 가진 문제점만 고치려고 하지 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일이 복기해 보면 형편없을 정도예요.

검찰개혁 뭣 때문에 합니까? 권력이 집중돼서 남용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권력기관 정립의 원칙은 누구나 혼자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검찰을 기소와 수사로 구분하는, 갈라서 따로 준다는 건데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은 누가 들여다보고 감독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제가 말씀을……

○주호영 위원 아니, 차관…… 그것 놓치면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주호영 위원 이 제도는 대한민국의 수사체계 전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못하면 엄청난 혼란이 와요. 해경 폐지할 때 내가 정부조직법 직접 해 봤거든요. 수사·정보권 없애라 하는데 어디 갖다 붙일 데도 없어. 그런데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을 누가 감독하고 체크할 것인지를 분명히 제대로 된 방안을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개혁 TF에서 아주 심도 있고 꼼꼼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게 별로 논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기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사를 경찰이든 국가수사본부든 어디서 하면 그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선관위 사무총장님, 저는 선관위원을 12년 한 사람이고 애정도 많은데요. 선관위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내가 상임위원하고 전 사무총장에게도 몇 번 당부했는데,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나라 선거 불신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많고, 지금 거리에 시위하는 사람 중에도 선거 못 믿는다는 사람이 많은데 선관위는 그냥 홈페이지에만 다 올려놓았다 하고 외면하고 있고 공중파라든지 국민을 상대로 선거의 공정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난번 선거국장하고 사무총장을 불러서 이야기해 보니까 한심하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지금 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 바를 다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나는 선관위의 전입받는 과정도, 나도 추천도 해 봤고 내용을 잘 알아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만 누리지 말고 중앙선관위원장이 비상임하면서 국경일 같은 때 무슨 5부 요인이라고 다니는 것만 하지 말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일을 해야 돼요. 오죽하면 선거를 못 믿어서 군인을 보내고 하는 그런…… 그것이 비록 잘못된 정보라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호영 위원** 그런 데도 선관위 전부 사무총장, 사무처장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자기들끼리 자식들, 친척 넣고 아주 필요할 때만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누리는 건 아주 누리는 전근대적인 기관이 됐어요. 독립된 부처라고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겠다, 땀것도 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나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대오각성하고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한 다 취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인사혁신처장님, 말끝마다 인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인사는 사기업 인사가 있고 공공영역의 인사가 있고 다르지요? 퍼블릭하고 프라이빗하고 인사원칙이 다르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어떤 면에서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행정학·경영학 교과서 기본만 보세요, 왜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다른지. 프라이빗은 이익 추구 원칙이에요. 퍼블릭은 공공이익을 위하는 게 기본이라고 가장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공공영역의 인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처음이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인사……

○**주호영 위원** 아까 60만인가 70만이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공공영역의 인사를 해 보신 적 있느냐고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중앙인사위원회가 처음 김대중 대통령 출범할 때, 그때 정책자문관으로 일했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 자문에 불과하잖아요. 너무 자신감 갖고 어디 가는 데마다 인사전문가라고 하지 마세요. 귀에 대단히 거슬려요.

그다음에 잣이 무거우면 목이 부러진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재앙으로 돌아와요,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위원들 인사 기준부터 다 정하고 모범이 되어야 될 텐데 본인이 그 기준에 맞는지는 한번 돌아보세요. 오리는요, 어미 닭을 따라다니다가도 물만 보면 뛰어들어요. 나침반은 두면 땐 데 돌려 놔도 북극을 향해요. ‘내가 이제 공직자가 됐으니까 잘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명심하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소방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청장입니다.

○권칠승 위원 어디 계십니까?

○소방청장 허석곤 여기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2015년부터 24년까지 10년간 소방공무원 위험직무 순직자가 35명입니다. 그런데 자살자가 134명이네요. 거의 4배 정도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주 균일하게 이 경향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된 거지요. 제가 의심하는 바로는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출동했던 그 소방공무원처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소방공무원처럼 현장에서 겪는 어떤 트라우마가 다른 직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소방청장 허석곤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관련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소방은.....

○권칠승 위원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하여튼 관련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게.....

○권칠승 위원 그렇게 의심할 만한 데이터도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20년부터 25년 8월 달까지 계급별 자살 사고를 협원 대비 비율로 보니까 소방위가 0.42%로 다른 계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건 무슨 이유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기도는 소방위 계급이면 한 15년 이상 근무를 한 계급입니다. 그리고 초급간부로서 현장이나 업무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의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특별한 분석과 특별한 관리도 필요하잖아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소방청에서 방기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제가 지금 다른 자료도 있는데 하여튼 이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 허석곤 예, 이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칠승 위원 이게 오래된 건데 또 새로운 연구용역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동안하신 걸 내놓으시라니까요.

○소방청장 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행안부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권칠승 위원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이게 손해율이 엄청 좋네요. 21년부터 24년까지 5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올해같이 대규모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지금 100% 훨씬 넘어가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물론 그런데 21년부터 24년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5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고 30%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23년 8월 달에는 기부가입 유형, 24년 7월 달에는 일반가입 유형에 대해 자부담률을 대폭 올렸어요. 대폭 올리다 보니까 보험 가입률이 대폭 하락했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기부가입에서 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예,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거의 한 자리 숫자로 그냥 왕창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같은 이런 대규모 재앙이 났을 때 보험 혜택 받을 사람이 확 줄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보험상품 설계부터 완전히 잘못하신 거예요, 이것. 한번 돌아보시고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것.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주신 것 저희가 살펴보면서요, 손실·수익 이런 걸 보험사에 잘 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 제도 개선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사업 있잖아요. 이게 3년인가 4년 동안 시행됐는데, 3년 정도 시행하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22년부터 24년까지 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3년간 하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권칠승 위원 3년간 하신 건데 이게 제도 설계가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권칠승 위원 23년에 KT 광화문 빌딩 그거 1건 말고 이 사업이 시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집행.....

○권칠승 위원 나머지 전액 미집행됐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칠승 위원 신청을 하겠습니까? 이게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지진이나 이런 게 났으니까 내진보강 사업 한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정부가 했다고 하는 모양만 잡는 거지, 저는 이 KT 광화문 빌딩을 왜 했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신청도 있는데요. 당연히 신축되는 거는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옛날 낡은 거니까……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광화문 KT 빌딩이 이 사업에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계획을 이렇게 짜면 당연히 신청을 안 하지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짜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실행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짜 주십시오. 아마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풍수해보험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지나간 사업이어서…… 25년도에 지금 없어졌잖아요, 워낙 집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시도록 하고 풍수해보험 재설계 계획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먼저 이태원 참사 당시에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애썼던 소방관 두 분께서 생을 등지셨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최동석 처장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소방관분 중에 한 분은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셨었지만 업무상 관련이 없다라는 이유로 불승인이 났어요. 사건 발생 2년 뒤에야 초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불승인 이유라고 들었는데요. 납득이 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 예, 납득이 어렵지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은 연속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면 거의 다 불승인이 난다라고 하고 또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20년 전의 어떤 현장의 기억들도 지금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소방관들의 트라우마는 누적형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한순간이 아니라?

이 참사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의위원회가 이런 참사 트라우마의 특성 그리고 소

방관이라고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업무의 특성을 간과한 채 업무 관련성을 소극적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 큰 틀에서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과 전문가의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소방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이런 소극적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제가 이 사건을 보고받았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용혜인 위원** 아니, 제도개선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정도의 이야기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아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왜 그런 사건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혜인 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예규상에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용혜인 위원** 그런데도 왜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용혜인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은 공무상재해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 정부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동수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재해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장에게만 위원 임명·위촉 권한이 있고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심의위원 중에 지난 3년 동안 심의위원회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전체 84명 중에 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석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참석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위원들만 반복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다 보니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현장에서 나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오늘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공무상재해심의위원회에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위원들의 균형 잡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인혁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이게 재해냐 아니냐 그리고 공무상 재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본인 신청인의 또는 그 유족의……

○**용혜인 위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개별 사안에 대해서……

○**용혜인 위원** 기존의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상 재해 인정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인 점검에 좀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정감사 때까지 관련 논의들을 더 이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예.

○**용혜인 위원** 유재성 차장님과 윤호중 장관님께 질문드려야 되는데 대행님께 질문드릴게요.

먼저 차장님,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약 1만여 명이 최대 5년 치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의 군경력 인정분을 급여 삭감 방식으로 환수당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개 부처에서만 841명 대상으로 환수가 진행되고 있고 그 규모가 15억 5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 넘는 규모를 환수당해야 하는 청원경찰들도 12명이 넘습니다, 1개 부처에서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체 부처로 늘어나게 된다면, 파악을 다 해 보게 된다면 대상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텐데요.

이게 사실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데 이 유권해석이 10년도 더 넘은 2014년에 있었고요. 그동안 군경력에 따른 수당을 인정해서 지금 해 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 말에 환수가 결정이 되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1월부터 환수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부당하다라고 보는데 시행령 9조 3항을 개정하거나 삭제를 하면 이분들의 환수 조치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경찰청 소관 법령인데 개정 건의권을 행사할 의지나 좀 검토해 보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 시행령 개정이 국가나 지자체의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라 저희가 기재부 등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를……

○**용혜인 위원** 청장님, 이거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지출됐던 부분들을 환수할 거냐에 대한 것이고 기존에 지출되고 있던 것과 동일하게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 예산 부담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대행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행님이 아니라 차관님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군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반영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인정이 되던 청원경찰들은 군경력마저 수당에서 환수를 당한다, 심지어 그게 1000만 원 규모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원경찰 봉급을 보면 1호봉 최저임금에서 시작해서 최고 31호봉까지 가는데 월급이

374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의 이름으로 다시 뺏어 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선감학원 국가 상소 취하 결정에 행안부가 힘써 주신 거 특히 윤호중 장관님이 애써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좀 상식과 조리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장관님께 건의해 주시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보수, 봉급 수당인데 수당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혜인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이런 부당한 대우가 있지 않도록 소관이 경찰청이니까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시행령 개정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일 위원** 차관님, 과거 윤석열 정부 국가공무원 5000명 감축 계획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매년 1%씩 정원 감축해 오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계획이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거나 행정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약간 졸속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계기관 협의하에 추진해 왔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초중등 교원을 계속 감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전에는 매년 1%대 감축을 하다가 윤석열 정부 때 3%대를 감축을 해 가지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우성이 지금 비대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돌봄, 생활지도, 기초학력 증진 등 교사 역량을 확대하고, 필요한데 교원이 감축되고 그러면 교육의 질 저하, 교권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학령인구 감소 지역과는 좀 다릅니다, 지방하고. 왜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면서 학생들이 증가하고요. 다문화, 특수교육 이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당부드리는 게 3%대 감축 기조는 이제는 유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대,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말씀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요. 다만 학령인구가 좀 크게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건데요. 교과 선생님이 있고 비교과 선생님이 있어서 비교과 선생님들은 또 증원해 준 측면도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3년, 27년 교원수급계획을 또 관계부처,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가 협의한 건데 지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시 검토하는 방안

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교육청과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고 뭘 하면 될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정근식 위원장님이 저에게 한 두 번 전화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정책위 위원장님하고 좀 이거와 관련해서 논의하자 그래서 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사무총장님, 화면에 보인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채현일 위원**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들어 준 가짜 대통령,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합니다’, 동의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지금 헌법이나 정당법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정당은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채현일 위원** 정당의 자유를 보장해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현일 위원** 지난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채현일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정당 이름조차 안 보이는데 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 현수막 정당입니다. 무늬만 정당이고 현수막만 붙이는 전문 정당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들은 옥외, 일반적인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관리를 하지만 정당 현수막은 예외 적용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라는 국가사무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관위 명예도 훼손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갈등, 사회 혼란을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이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자자체도 선관위도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거지요. 국민들이, 저희 주민들도 하루에 수십 차례 저희 의원실, 지역 사무실 또 당에 연락이 옵니다, 왜 방치하느냐.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했고 결국 사무처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위원회에까지 보고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제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 규제하는 부분은 정당활동의 자유 그다음에 규제의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채현일 위원** 정당 현수막 관리도 정당사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최종 책임은 선관위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이, 선거 행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관련 입법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 당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꼼꼼하게 챙길 테니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경찰청 차장님, 어제도 예결위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제 자로 경찰국 폐지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그리고 윤호중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경찰국 폐지로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찰국으로 인해서 경찰 조직이 비정상화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겁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뭐가 비정상화가 되었습니까, 경찰의 입장에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경찰국이 생김으로 해서 경찰의…… 법상으로 행안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규정이 다 돼 있는데 그 외의 업무를 경찰국을 통해서 이렇게……

○**서범수 위원** 그 외 업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인사라든지……

○**서범수 위원** 인사도 어느 정도 인사를 말씀하십니까? 총경 인사 이상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도 다 관여했다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인사라든지 다른 업무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의 정치적……

○**서범수 위원** 그래서 결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역량을 강화시켜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버티는 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경찰.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 언론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출동한 현장 직원에 대해서 다시 감찰조사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의원면직과 포상 추천 제한까지, 이게 사실입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서범수 위원 다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3년 전 그 트라우마에 의해서 많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을 해야 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관도 지금 두 분께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돌아가신 부분도 있는데 이걸 또 과거 3년 전의…… 아니, 지휘관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도 아닌데 굳이 현장 직원을, 여기에 보니까 용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직원, 이태원파출소 소속 순찰팀 20여 명 이런 현장 직원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을 또 불러서 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책임자 가리는 겁니까? 뭡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합동감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해당되는 부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개시 통보를 했고……

○서범수 위원 제발 차장님, 우리 현장 직원들은 보호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설사 정부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청에서 좀 디펜스를, 쉴드를 치면서 ‘우리 현장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다 끝났다. 책임자가 있으면, 지휘관이 있으면 지휘관 상대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조직 차원에서 현장 직원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지 이걸 지금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래서 책임이 없는 직원들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 종료를 하도록……

○서범수 위원 신속하게 한다는…… 그거 결국 또 3년 전의 이야기를 긋어 부스럼을 낸다는 거잖아요, 차장님.

행안부차관님, 한번 같이 의논을 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직원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진상규명 그때 할 만큼 다 했잖아요, 현장 직원들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아마도 그 당시에는 경찰 수사라든지 이런 쪽에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싶고요.

○서범수 위원 그때도 수사 갔지요? 수사하려…… 저 경찰 출신인 것 아시지요? 감찰 조사받아야 되지요 수사받아야지요 재판 가야 되지요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지금 조직에서는 그냥 내 일 몰라, 너희 알아서 해, 방관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경찰청 차장님.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관련된……

○서범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경찰청에서 보호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님, 이달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처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복무 기준을 하달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공무원의 외부 활동 축소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 활동, 외부 행사의 참석을 자제해라, 출장 간소화해라, 외부 강의 자제하라.

저는 사실은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공문을 보는 것처럼 세상이 거꾸로 가나 싶은 거예요. 지금은 행정이라는 게 폐쇄적 행정이 아니고 개방적 행정이잖아요. 특히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현장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 올바른 행정이 안 되겠어요? 잘못하면 이거 탁상행정 됩니다.

그래 놓고는 본인은 정작, 인사혁신처장님은 사흘이 멀다 하고 임명장 수여식한다고 대통령실이나 저쪽으로 갑니다.

대통령 얼굴 보러 가십니까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상장 수여하는 데 가지 말라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본인은 이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정작 공무원들한테는 외부 활동을 하지 말라 합니까?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그게 외부 활동이 아닙니다, 위원님.

○**서범수 위원** 왜 외부 활동이 아니에요? 청을 벗어나면 외부 활동이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저희 처의 업무입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처의 업무지요. 다른 직원들도 상장을 수여하러 간다든지 외부 행사 하는 것도 본인의 업무지요.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임명장을.....

○**서범수 위원** 그렇게 다른 기준을 정하지 마시라고요.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김민재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대 정부별로 보면 디지털혁신위원회를 해서 김대중 정부에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는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박근혜정부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그렇지요?

(신정훈 위원장, 윤건영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위성곤 위원**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4월에 민간주도형 초거대 AI 기반 민원상담 서비스 검토 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4년 11월 말에 사업 변경을 해서 민원도우미 학습데이터 자동생성 모델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실패한 것이지요. 관련해서 질문을 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출범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공공 AI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재명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것

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사람을 위한 AI, 모두를 위한 AI가 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여러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AI 정부 실현들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윤석열 정부 추진 과정 안에서 보면 민원 자동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내걸었는데 실패했던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정부에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그걸 또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민원 자동화 서비스 재난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이게 아주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AI 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데이터 표준화 편향,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같은 문제를 차단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력과 협력체계 마련이 핵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정부 차원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만들고 행안부 소속의 AI정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부처별 AI 사업의 통합 조정, 범정부 AI 로드맵 수립, AI 윤리 투명성 기준 마련,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는 위원장 중심, 위원장은 민간 또는 장관이 하고 각 정부 핵심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고 민간의 산업계·학계·법조계가 참가하는 혁신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AI가 이해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AI가 이해하는 정부, 그동안 실패했던 것이 폐쇄적 문서 포맷 그리고 비구조화된 데이터, 부처 간 단절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개방형 포맷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메타데이터 관리가 필요한데 메타데이터 관리가 뭔지는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성곤 위원** 제목이라든가 핵심 요약이라든가 관련 법규가 기록되어진 것 그리고 문서 포맷 표준화가 필요한데 지금 아래아 한글과 PDF로는 AI가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는 파일을 생성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대책을 AI가 읽을 수 있는, AI가 정부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정부의 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통합 전략과 정책이 그러니까 부처, 지자체가 지금 각기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셋째로는 윤리와 신뢰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국민이 AI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런 논의들이 저는 정부가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또한 인력 양성 그러니까 공무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 역량 교육을 정례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기술이 신속하게 공공부문에 도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위원장대리 윤건영 그냥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하나만, 소방 관련.....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소방관 2명이 사망하셨는데요. 사망한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퇴직자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소방청, 행안부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는..... 민간기업에서는 퇴직자들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퇴직 사유를 분명히 정리해 놓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데이터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모경종입니다.

허철훈 사무총장님, 앞서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화면을 한번 먼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채현일 위원님이 보여 주셨던 그 현수막들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봤습니다.

○모경종 위원 이 지점에 대해서 아까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못 취하는 근거가 뭐라고 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지금 헌법이나 정당법 여기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현재에서도 정당을 두텁게 보호하라고 했는데 제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모경종 위원 헌법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정당 관련된 규정 중에 헌법 8조 2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당은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 본질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제재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현재 판례에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해서 정당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판례도 있고 또 정당활동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민주적 기본질서 보호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그런.....

○모경종 위원 사실 헌법에는, 헌법 가치가 상충되는 사례는 사회에서 무수히 발견이 됩니다. 과연 거기서 형량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혐오표현에 대해서 어떤 결정례를 내렸느냐면 예전에 서울 학생인권 조례 관련된 혐오표현 금지 합헌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혐오표현 자체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 화면을 보시지요.

‘가짜 대통령인 줄 미국도 안다’,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이다’, ‘중국인이 투표한 이재명은 당선이 무효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어떤 특정 누군가를 비호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이것 기본적으로 어떤 혐오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경종 위원** 그럼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선관위가 조치를 못 하겠다고 하는 근거가 정당법이나 그다음에 헌법 이런 가치들을 이야기하셨는데 반대로 헌법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관위가 입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주면 그때서야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관위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있고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조치를 과감하게 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뒷짐 지고 계실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현수막들이 저희 지역에는 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단지 앞에 있어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사진들을 보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그리고 정당정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막 가지시는 분들도 이런 지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관위가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입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거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선관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위원님,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게 정당법이고 정당법 내용은 규제보다는 아마 정당활동을 보호하는 데 이렇게 중점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관위도 역시 정당을 규제하기보다는 지원하는 그런……

○**모경종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정당법 37조 2항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어디를 봐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그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모경종 위원** 그럼요. 명확하지 않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선관위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있고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그렇지만 정당의 어떤 활동의……

○**모경종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총장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거기에 딱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경종 위원** 그렇지요. 그 답변에서 벌써 할 수 있는 선관위의 여지 자체가 열려 있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법 37조 2항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사무총장님, 취임 언제 하셨습니까, 선관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8월 1일 자로 했습니다.

○박덕흠 위원 8월 1일 자로요.

축하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감사합니다.

○박덕흠 위원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지역 특산물을 제가 말을 했는데 혹시 선물하실 기회가 있으면 선물을 해도 좋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총장님, 선거기간 인력 운영 및 인건비 이·전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혹시 총장님, 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공명선거 실현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위원 예, 맞지요. 그런 엄격한 선거관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선관위가 가장 바쁜 시기인 작년 총선을 앞두고서 휴직자가 대폭 이렇게 늘어납니다. 또 선거 끝난 한두 달 뒤에 복귀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2022년 대선·지선 때도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서 아마 국회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지적받은 건 알고 계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아마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하고 또 선거관리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워서 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도 그걸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휴직자 수를 지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휴직자 증가, 이를 대체할 인력 채용 증가는 인건비 부족으로 해서 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전용을 해서 썼었지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65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이·전용이 많은 건 예산심의를 할 때 대비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전용이 이렇게 많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국회에서 예

산 통과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가 보낸 이·전용, 화면 좀 봐 주세요. 이·전용 승인 요청 공문을 보면 전체 사업비 가운데 40% 이상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사업도 있고 또 재보궐선거 관리, 선거방송토론푸, 공명선거 기반 조성 등 선거와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의 40%까지 깎인 사업이 있는데 해당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로 이·전용했음에도 사업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게 곤 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것 아니겠나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만큼 사업 추진하는 데, 삽감을 해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한 예측을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회의원선거를 관리할 때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은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관인 수가 대폭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개표 때 수검표를 도입해서 사무원이 늘어난 부분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필요했고, 30억 정도가 필요했고 그러한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에서 먼저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박덕흠 위원** 그러면 미리 국회에서 그 수요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박덕흠 위원** 그때 한번 또 보면 알겠는데 업무상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선거를 전후해서 휴직자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때 고생들 하시거든요. 선관위 직원들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특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4년도 총선 때 소쿠리 투표 아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22년 대선 때였습니다.

○**박덕흠 위원** 22년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박덕흠 위원** 그리고 25년도에 밥그릇 투표, 대선 때 남편 명의 이런 것, 이런 것이 그런 경험이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휴직률이 이렇게 많아서 생기는 것 아닌가. 이게 전체적으로 선관위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한두 명의 실수로 또 잘못으로 이렇게 선관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를 잘못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휴직 이 부분은 잘 챙겨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직률을 좀 줄여 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앞으로 합리적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휴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덕흠 위원**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허철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한 2~3분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경찰청 차장님께, 기순대 어떻게 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순대는……

○위원장대리 윤건영 짧게요.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순대는 내실화해서 계속……

○위원장대리 윤건영 내실화한다는 게 그냥 유지한다는 겁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간부들은 기순대 유지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그런데 하위직, 하위직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선에 계시는 고생하시는 분들은 다들 기순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암도적인데 왜 그렇게 기순대에 목을 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순대를 처음에 만들 때 사실은 지구대·파출소에서 인력을 한 명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내근자, 그 행정……

○위원장대리 윤건영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그렇게 했는데 기순대가 이게 해체가 되면 지구대나 파출소의 인원이 좀 증원이 될 수가 있게……

○위원장대리 윤건영 차장님, 지금 기순대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기순대 나가서 하시는 것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현장에서?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제가 시도 청장 할 때도 같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같이 하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순대가 현장에서 하시는 것 보면, 저도 나가 봤거든요. 애초에 전임 청장들이 내세웠던 그런 목표들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요, 대부분은. 아마 차장님이 나가실 때는 보여 주기를 위해서 제대로 하셨을 텐데 실속은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장께서는 기순대와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행안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현일 위원님께서 교사 정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의식에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님, 이게 보니까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새 정부에서 새로운 기조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건영 아까 차관님 말씀이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학령인구요.

○위원장대리 윤건영 학령인구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유 딱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 저희 사회에 주요하게 부각되면서요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는 다문화 비중이 70%가 넘어가는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의 수요가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문화 학교가, 다문화 비율이 70%가 넘어간다라는 건 그만큼 교사의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줄어들면 학급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아까 차관께서 세심히 잘 살펴보시겠다고 했으니 관련해서 단순한 정원의 문제로 보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관련 교육부 라든지 제대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학생 수, 학급 그다음에 학교 이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윤건영** 그러면 제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끊고요.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 빼고 여야 세 분씩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수석님, 혹시 우리 제안설명 이런 것 제본해 오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특별히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이달희 위원** 자, 소방청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지요.

우리가 거품을 뺄 건 빼고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이런 일은, 안 해도 될 일 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방청 제안설명 보면 첫 페이지 또 이렇게 두꺼운 것,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아무것도 없고 한 페이지짜리에 끝나는데 뒤에 또 하나 둘셋 7페이지……

(웃음소리)

웃을 게 아니에요.

경찰청 볼까요.

경찰청 이렇게 뺏뺏한 마분지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제안설명 또 들어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장님 제안설명은……

1분만 주십시오.

이런 낭비 행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것 다 합쳐서, 인사혁신처도 그렇고 다 합쳐서 우리 국회의원들 제안설명하시는 것 귀로 들어도 되고 정말 필요한 장 수만 딱 해서……

지금 우리 국회가, 의장님 중심으로 국회의원 전부가 탄소중립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에서도 업무보고할 때 정말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행정부

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폐이폐를 만들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덕흠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윤건영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제가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2년 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많은 분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올
여름에도 전국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졌고 앞으로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지고 대형화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반성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다음 달 9월에 충북에서는 큰 세계국악엑스포가 열립니다, 9월 12일부터. 그리고
제천에는 국제한방전연물산업엑스포가 열리고 그래서 2건의 큰 세계인들이 모이는 그런
국제 행사가 열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를 위해서 충북도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고 세계에서도 많이 참석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국정조사로 현직 도지사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고 또 도청 공무원
이나 그 관계자나 공무원들 인력들이 그 준비를 하려면 결국은, 회의는 하루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에 공무원들이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많은 타격이 갈까 매우 걱정이 되고.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업계
가 공동으로 준비해 온 행사를 우리 국회가 방해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특히 예산도 국비·도비·군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채택한
오송 지하차도 관련 국정조사 일정을, 다른 것도 아니고 일정을 조정해서 우리 위원장님
또 간사 간의 재논의를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건영 예. 박덕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서 그렇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달회 위원님 말씀처럼 종이 같은 것 낭비 안 하게 하고요. 종이 자료 다 없앴
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예. 제 자리에는 종이 놓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성희 위원님, 박수민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이달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서면답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

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권칠승 김성희 모경종 박덕흠 박수민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정춘생 주호영 채현일 한병도

○청가 위원(2인)

박정현 이해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차관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용석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안전예방정책실장 김용균

사회재난실장 홍종완

조직국장 이창규

자치분권국장 박연병

자연재난대응국장 정창성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비상대비정책국장 김정학

정책기획관 임철언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기획조정관 김성훈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

인재채용국장 손무조

인사혁신국장 유승주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경영본부장 최관섭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기획조정관 도준수
미래치안정책국장 최주원
범죄예방대응국장 고평기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치안정보국장 유승렬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박정훈
재정담당관 이광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순명
소방청
청장 허석곤
기획조정관 오승훈
화재예방국장 홍영근
장비기술국장 윤상기
기획재정담당관 이진호
보건안전담당관 정건일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구동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사무처장 송상교
기획운영관 한성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사무처장 박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허철훈
기획조정실장 옥미선
선거1국장 이상능
선거2국장 경범훈
법제국장 도희락
조사국장 조봉기